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등록말소) 효력재개 공고

경기도 공고 2022-5509호(2021.5.4.)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말소)의 집행정지를 해제하고, 그 효력재개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6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공고내용	효력재개사유
호명종합건설(주) (조병엽)	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166-3, 상가동 205 호 (대교산과내아파트)	건축공사업 (10-5630)	등록말소 효력재개 (2022.11.28.)	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(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-6152) 청구인의 청구 기각에 따른 효력재개 (재결일 2022.11.01.)